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58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2조(영업신고 등)의 일부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에서 휴게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하고자 함(안 제2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6.2.5 ~ 2.25.)결과 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희순 (☎ 02-2133-4716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휴게음식점영업 또는”을 “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관련법령”을 “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련법령”을 “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 적) 이 조례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, 청년·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·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「<u>식품위생법 시행규칙</u>」(이하 “<u>시행규칙</u>”이라 한다)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영업장소) ① <u>시행규칙</u>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<u>휴게음식점영업</u> 또는 <u>제과점영업</u>(이하 “<u>음식판매자동차 영업</u>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(이하 “<u>시설·장소</u>”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6조(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)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<u>관련법령</u>에 따른 위생, 안전</p> | <p>제1조(목 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식품위생법 시행규칙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영업장소) ① 「<u>식품위생법 시행규칙</u>」(이하 “<u>시행규칙</u>”이라 한다) ----- <u>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) ----- -- <u>관련 법령</u>-----</p> |

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, 시설
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
이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)
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
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
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
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9조(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) -

--- 관련 법령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희순(02-2133-4716)